#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## 1. 계획의 의의

#### □□개념

○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(Rolling Han)

### □□ 제도운영의 필요성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, 구 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
- 단년도 예산편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진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,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구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
### □□ 근거규정 및 연혁

○ '88년 :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

○ '93년 : 연동화계획으로 운영

○ '95년 :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
○ '05년 : 수립시기를 상반기(4월)에서 하반기(11월)로 조정

○ '07년 :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
#### [ 관 련 근 거 ]

- □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) :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계획을 수립
-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):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재정지원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

# 2.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

□□ 계획기간 : 2013 ~ 2017년 (5년)

2013		2014		2015		2016		2017
최종예산안 (전망치)	<b>•</b>	예산요구 (안)	<b>•</b>	발전계획	<b>•</b>	발전계획	<b>•</b>	발전계획

### □□ 계획대상

○ 대 상 :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(기금 제외)

○ 기 준: '13년도 최종예산안(잠정계상)을 기준으로 하되,

'14년 이후는 성장률・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

### □□ 주요내용

○ 재정목표 :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

○ 재정전망 :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

○ 투자계획 :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

### □□ 계획방향

○ 「안전행정부 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및 「부산시 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」에 의거 계획 작성

-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,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·반영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·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2012~2016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
### □□ 계획수립 체계

- ①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시달
-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(안) 수립
- ③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
- ④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,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
- ⑤ 안전행정부 전국 계획 종합, 관계부처 협의
- ⑥ 안전행정부 ■국무회의 보고,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
- **지방자치단체**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, **지방의회**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
- **안전행정부**는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**국무회의 보고**